

2023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정 책 관

목 차

I 2022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지방세 지출 개관	7
2.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	8
3.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9
4.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특례 신설 · 확대	33

II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법 § 2①8 등)	37
2.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법 § 4②, 영2①)	45
3. 농어촌공사 감면대상 · 감면율 등 재설계, 사후관리 강화(법 § 13②) ...	49
4.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세목 축소, 최소납부배제 등(법 § 15② 등)	64
5. 직장어린이집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법 § 19①)	66
6. 사회복지법인등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법 § 22, 영 § 10)	68
7.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 취득시 감면대상 확대(법 § 22의2) ..	81
8.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법 § 31④)	84
9.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확대(법 § 36의3)	87
10. 대한적십자사 감면 확대(법 § 40의3)	93
11. 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특례 확대(법 § 44②③, 법 § 177의2)	95
12.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법 § 46)	99
13.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사후관리 강화(법 § 54①)	103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內 벤처기업 감면율 확대 등 재설계(법 § 58④) ..	108
15. 지식산업센터 감면 재설계 및 사후관리 강화(법 § 58의2)	110

16. SR 고속철도차량 감면 신설(법 § 63⑥)	116
17. 수소전기화물차 감면 신설(법 § 66⑤)	117
18. 물류단지 감면 조례 자율성 확대(법 § 71①②)	119
19.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감면세목 축소(법 § 71③)	121
20.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체계 정비(법 § 74, 영 § 35①②)	123
21. 인구감소지역內 창업기업 등 감면 신설(법 § 75의3 § 75의5, 영 § 35의6)	129
22. 국가등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등 감면 연장(법 § 76② § 77② § 85의2①④)	136
23. 지방이전 공공기관 감면 재산설(법 § 81①②)	139
24.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법 § 81④⑥)	141
25.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감면세목 축소(법 § 91)	145
26. 감면 제외대상에서 별장 제외(법 § 177)	147
27.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 명확화(법 § 177의2①)	149
28. 중복특례 배제 명확화(법 § 180)	152

III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규칙

1. 매각 · 증여 예외범위 신설(영 § 1의2)	157
2. 자경농민 감면규정상 인용조문 정비(영 § 3②)	160
3.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영 § 29① · § 38)	164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감면 위임규정 신설(영 § 35의2)	168
5. 반환공여구역등 감면요건 신설(영 § 35의5)	172
6.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 인용조문 정비(규칙 별지 제1호의4)	177

IV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속 환급 추진	183
2. 2023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187

I. 2022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지방세 지출 개관

1 개 념

-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비과세’와 ‘감면’으로 구분, 이 중 감면이 지방세 지출 재설계 대상

※ (비과세) 납세의무 배제 (영구, 지방세법) ↔ (감면) 세부담 경감 (한시, 특례법)

2 현 황

- '21년 비과세·감면액은 15.7조원(감면액 6.7조), 비과세·감면율은 12.2%
 - 비과세·감면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목표*('21년 13.8%) 이내 관리
 - * 직전 3개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 + 0.5%p, ('22년 목표 : 13.3%)
- 재정분권·부동산 세입 증가 등 지방세수 증가 및 지속적 감면 정비 등에 따라 국세에 비해 비과세·감면율은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지방세 지출 규모 및 비율 >



< 국세 비과세·감면율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세 징수액 (조원)	265.7	268.1	294.7	303.6	332.7
국세 비과세·감면액 (조원)	39.7	41.9	50.1	52.9	55.9
국세 비과세·감면율 (%)	13.0	13.5	14.5	14.8	14.3

3 운영 경과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상정, 각 부처 통보(~2월 말)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월 말)
- 예타·심층평가 실시(100억원↑ 신설·일몰도래 감면 3~7월)
-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7월)

2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

- ◇ 특례 신설·연장 판단 시 법제화된 지방세 특례 기본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1 목적의 타당성 분석

- 국가사무-지방사무 구분체계* 고려 및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 분석
 - *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의 범위, 지방 세출예산 편성 적합성 등 고려
-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도 및 효과 등 분석·정비

2 세목의 적합성 평가

- 확산·축진 정책과 보호·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적정 세목 선택
- 특정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적* 성격 세목의 감면 종료·신설 배제
 - *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3 지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

- 국가 및 지방 예산지원, 지방세 내 유사·중복지원 여부 판단
 - ※ 조세,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타당성 및 규모 결정
- 감면 대상·목적별로 구체화·세분화하고, 유사 감면은 유사 혜택 부여
 - ※ 단, 유사한 경우에도 조세부담능력, 공익성 등에 따라 감면을 차등화 가능
- 감면대상·목적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한 과도한 감면 배제
 -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 목적 규정 정비

4 지출 방식의 최적화

-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 평가 및 재설계를 위해 3년 기한 원칙* 운영
 - * 유사 감면대상 간 일몰기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1~2년 가능
- 지역 특성 반영이 필요한 지출은 조례를 통한 감면 활용
 - ※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필요사항, 각종 지역특구·특화단지 관련사항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 (범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이하 “본 적용요령”에서 동일하게 적용

1 농·어업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 농지§8①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② 임업후계자 등 교환분합용 토지§8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보전산지 :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보전산지 :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③ 20톤미만 소형어선§9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④ 어업권·양식업권 취득·면허§9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⑤ 농협 등 융자 담보물 등기§10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⑥ 농어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13②> ○ (감 면 율) - <u>농지매매사업 등</u> : 취득세·재산세 50% - <u>생산기반정비</u> : 취득세·재산세 50% - <u>경영회생지원</u> : 취득세·재산세 50% (농업인 환매시 취득세 100%) - 그 외 사업 : 취득세 25%~50% ○ (일몰기한) <u>2022.12.31.</u>	☞ 감면대상·감면율 재설계,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 <u>농지매매사업 등</u> : 취득세 50% - <u>생산기반정비</u> : 취득세 50%, 재산세 75% - <u>경영회생지원</u> : 취득세·재산세 50% (농업인 환매시 취득세 100%) - 그 외 사업 : 취득세 25%~50% ○ (일몰기한) <u>2025.12.31.</u> ※ 개별 사후관리 규정 신설
<⑦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등§15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⑧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유통사업용 부동산등§15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u>등록면허세 100%*</u> *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일몰기한) <u>2022.12.31.</u>	☞ 감면세목(등록면허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도 3년 유예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일몰기한) <u>2025.12.31.</u>

< 개정내용 >

- (①) 농지 확보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면 연장
- (②) 산림보호·관리 및 임업 경제성 제고를 위해 감면 연장
- (③④) 어업인 소득안정, 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감면 연장
- (⑤) 농어민을 위한 지속 지원을 위해 농·수협 등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감면 연장
- (⑥) 농어촌공사가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 재설계

* (§13②1, 농지매매사업, 농지재개발사업 등) 감면대상·세목·감면율 등 정비 (§13②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재산세 감면지원(50%→75%) 확대

① 농지매매사업 등 사업 특성 및 他규정(제3호~제5호)과의 형평성 고려, 소유단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 종료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감면토록 개선

* 농지취득 부적격자로부터 취득사업(농지법§11), 농지이용증진사업(농지법§15) 등

③ 농지 재개발사업은 농지外 용도로 개발하는 영리 사업에 해당, 그 성격이 유사한 제4호(생활환경정비사업)와 동일수준 지원*

* 현행(제1호)취득세·재산세 50% 감면 → 개선(제4호의2 신설) 취득세限 25% 감면

※ 사업별 구체적 개정사항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은 “Ⅱ편 개정내용” 참조

- (⑦)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는 점 고려 감면 연장
- (⑧)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성 고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하되,

* '23년부터 적용토록 한 최소납부세제도 '26년부터 적용토록 3년간 적용 유예

- 등록면허세는 행정 수수료적 성격인 점 고려 감면 종료

2 사회복지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장애인고용공단 직접사용 부동산§18>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② 어린이집용 부동산§19①> ○ (감면내용) 직장어린이집 유형별 감면 <table><tr><td>세 목</td><td>직접사용</td><td>위탁운영</td></tr><tr><td>취득세</td><td>100% 감면</td><td>-</td></tr><tr><td>재산세</td><td>100% 감면</td><td>100% 감면</td></tr></table> ○ (일몰기한) 2024.12.31.	세 목	직접사용	위탁운영	취득세	100% 감면	-	재산세	100% 감면	100% 감면	☞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 (감면내용) 직장어린이집 유형별 감면 <table><tr><td>세 목</td><td>직접사용</td><td>위탁운영</td></tr><tr><td>취득세</td><td>100% 감면</td><td>50% 경감</td></tr><tr><td>재산세</td><td>100% 감면</td><td>100% 감면</td></tr></table> ○ (일몰기한) 2024.12.31.	세 목	직접사용	위탁운영	취득세	100% 감면	50% 경감	재산세	100% 감면	100% 감면
세 목	직접사용	위탁운영																	
취득세	100% 감면	-																	
재산세	100% 감면	100% 감면																	
세 목	직접사용	위탁운영																	
취득세	100% 감면	50% 경감																	
재산세	100% 감면	100%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2> ○ (감면대상)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일부 사회복지시설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등록면허세* 100% * 등록면허세 감면은 사회복지법인에 한 ○ (일몰기한) 2022.12.31.	☞ 감면대상 확대·감면율 재설계, 3년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 개정 전과 동일 - 한국한센복지협회 : 개정 전과 동일 - <u>소사회복지시설</u> : 취득세·재산세 25%*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무료시설)은 취득세100%, 재산세 50% ※ 모든 시설에 대해 조례로 50%p 추가 감면 可 ※ 개정 전부터 감면대상이었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4년까지 종전과 동일한 감면 적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025.12.31.																		
<④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감면§22의2> ○ (감면대상) <u>다자녀 양육자</u>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자, <u>양육자 사망시 자녀 포함</u>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받는 경우 限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⑤ 법률구조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23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⑥ 한국소비자원의 직접사용 부동산§23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⑦ 근로복지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27①>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⑧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28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 §28③>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30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⑪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 주택용 부동산§31의5> ○ (감 면 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u>2024.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⑫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36의3> ○ (감면요건) 주택가액 3억(수도권 4억)↓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감 면 율) 주택가액 기준 차등 적용 - 1.5억↓ 주택 : 취득세 100% - 1.5억↑ 주택 :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3.12.31.	☞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을 확대, 2년 연장 ○ (감면요건) 주택가액 12억 ↓ (소득 기준 無) ○ (감 면 율) 취득세 100%(2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5.12.31.
<⑬ 대한적십자사(의료사업外)의 직접사용 부동산§40의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2.12.31.	☞ 감면을 상향, 1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3.12.31.

< 개정내용 >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장애인 취업지원 등 지역복지 기여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②)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시에도 취득세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 확대
- (③)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재설계하면서 감면 연장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 개정 前 >			< 개정 後 >	
세목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취득세 · 재산세*	①사회복지법인	100% (최소납부 적용)	①사회복지법인	100%
	②한국한센복지협회		②한국한센복지협회	(최소납부 적용)
	③4개 사회복지시설 (양로, 가족복지, 한센병 요양, 이동양육 시설 등)		③ 주 사회복지시설 * 조례로 50%p 추가 가능	(무료시설) 취100%·재50%* (유료시설) 취·재 25%*
주민세	上同 (①+②+③)	100%	上同 (①+②+③) + ④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

*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100%인 대상은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

- (④)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등록*하는 경우도 추가
 - * 사망한 양육자의 자동차를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지분대로 취득하는 경우限
 - ※ 구체적 내용은 “Ⅱ편 개정내용” 참조
- (⑤~⑦)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 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 ⑥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정책 연구 및 소비자 피해구제, ⑦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⑧~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 ⑧근로자의 안전확보, ⑨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⑩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 등
- (⑪)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임대주택의 신속 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 측면 고려하여 감면 연장(2년)
- (⑫)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면대상 및 감면을 확대 조정(~'25년)
- (⑬)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구호사업·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을 확대 조정(~'23년)

3 교육·과학기술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전공대학 직접사용 부동산§46> ○ (감면내용) - 평생교육사업 : 취득세·재산세 100% ※ <u>최소납부 적용</u> ○ (일몰기한) 2024.12.31.	☞ 감면대상, 감면세목 및 감면을 확대 ○ (감면내용) - 평생교육사업 : 취득세·재산세 100% ※ <u>최소납부 배제</u> <u>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u> <u>면허분 등록면허세 100%</u> - 산학협력단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②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부동산§46> ○ (감 면 율) 기업규모별 차등 - 취득세 35%(대기업) ~ 60%(중소기업) 재산세 35%(대기업) ~ 50%(중소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세목별 <u>10%p 추가 감면</u> ○ (일몰기한) <u>2022.12.31.</u>	☞ 신성장·원천기술 5%p 상향, 3년 연장 ○ (감 면 율) 기업규모별 차등 - 취득세 35%(대기업) ~ 60%(중소기업) 재산세 35%(대기업) ~ 50%(중소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세목별 <u>15%p 추가 감면</u> ○ (일몰기한) <u>2025.12.31.</u>
<③ 한국환경공단 직접사용 부동산§47>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u>현행 3년 연장</u>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④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등 부동산§48>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u>현행 3년 연장</u>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제 등 부동산·선박§49>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u>현행 3년 연장</u>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개정내용 >

- (①)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운영방식이 유사한 측면을 고려하여,
 -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감면(§41) 수준으로 지방세 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 산학협력단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특례 신설(~'24년)
 - * 전공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可
- ※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공대학에서의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不可
- (②)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성장 원동력으로 기능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점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 등 신성장 분야 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감면을 확대
 - * 신성장·원천기술분야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5%p(10%p→15%p) 상향 조정
- (③~⑤) ③한국환경공단, ④국립공원공단, ⑤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각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 ③폐기물 처리기법 등의 연구개발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④생태 보전, ⑤해양환경보호 및 긴급방제조치 등에 기여

4 문화 · 관광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부동산§54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법정 25% + 조례 25%限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법정 25% + 조례 25%限 ○ (일몰기한) <u>2025.12.31.</u> ※ <u>개별 사후관리 규정 신설</u>
<② 평창선수촌 부동산 별장 중과배제§54⑥> ○ (감 면 율) 재산세 중과세 배제 ○ (일몰기한) <u>2022.12.31.</u>	☞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u>일반세율 적용(일몰 연장 不要)</u>

< 개정내용 >

- (①)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코로나19 침체 회복 및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 등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
 - 과세 형평성 및 감면제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별 규정에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 (②) 평창올림픽 선수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별장 중과세 배제는
 - 지방세법상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별도 연장 조치없이 일반세율 적용

5 기업구조 · 재무조정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 §56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②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內 벤처기업의 직접사용 부동산§58④>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37.5% ○ (일몰기한) <u>2022.12.31.</u>	☞ 감면율 확대 및 조례 자율성 강화 등 재설계,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재산세 50%* * (재산세) 법정 35% + 조례 15%限 ○ (일몰기한) <u>2025.12.31.</u>
<③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58의2> ○ (감 면 율) - 설 립 자 : 취득세 35%, 재산세 37.5%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일몰기한) <u>2022.12.31.</u>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 면 율) - 설 립 자 : 취득세 35%, 재산세 35%(5년) 입주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5년) ※ (재산세 감면기간 5년) 개정 전 취득한 자도 '23년부터 5년간 감면 적용 ○ (일몰기한) <u>2025.12.31.</u>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59①>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부동산§59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⑥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의 직접사용 부동산§59③>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 ○ (일몰기한) <u>2025.12.31.</u>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6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전통시장) 취득세 7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전통시장) 취득세 75% ○ (일몰기한) <u>2025.12.31.</u>
<⑧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용 건축물§60②> ○ (감 면 율) 취득세 저율세율(2%) 적용 ○ (일몰기한) <u>2022.12.31.</u>	☞ 감면 종료
<⑨ 지방중소기업센터의 직접사용 부동산 §60④>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 개정내용 >

-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업무는 지역 경제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

- (②)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 감면을 확대하면서 연장하는 한편,
 -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 및 벤처기업 유치 노력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는 조례를 통한 감면의 자율성 확대 부여

-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산업단지 등 유사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재설계하면서 연장
 - (취득세)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50%→35%)하고,
 - (재산세) 설립자·입주기업 모두 감면율을 조정(37.5%→35%)하면서 5년간만 지원토록 기한 설정

※ 기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개정사항은 “Ⅱ편 개정내용” 참조

- (④~⑥) ④^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⑥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④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⑤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임대, ⑥지역 내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

- (⑦~⑨) ⑦중소기업협동조합 및 ⑨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을 고려 감면 연장하되,
 - ⑧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최근 감면실적이 없는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감면 종료

* ⑦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구매·판매·보관 및 공동물류센터 운영, ⑨기업 경영,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수행

6 수송 · 교통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63①>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② 국가철도공단의 국가등에 귀속 철도 차량, 부동산§63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③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철도차량§63③> ○ (감 면 율) -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 일반 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 철도차량 :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 일반 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 철도차량 :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④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철도차량 등§63⑤>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등록면허세 100%* *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도 3년 유예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등록면허세 100%* *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일몰기한) <u>2025.12.31.</u>
<⑤ SR의 직접사용 고속 철도차량 §63⑥>	☞ 감면 신설, 일몰기간 3년 ○ (감 면 율) <u>취득세 25%</u> ○ (일몰기한) <u>2025.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⑥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66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u>2024.12.31.</u>
<⑦ 수소전기화물차 구입자§66⑤>	☞ 감면 신설, 일몰기간 3년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연구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등§69>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2.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⑨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부동산§71①②> ○ (감 면 율) - 시 행 자 : 취득세 35%, <u>재산세 35%</u>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 ○ (일몰기한) <u>2022.12.31.</u>	☞ 조례 자율성 확대, 3년 연장 ○ (감 면 율) - 시 행 자 : 취득세 35%, <u>재산세 25%*</u> * 조례로 10%p까지 추가하여 최대 35% 可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 ○ (일몰기한) <u>2025.12.31.</u>
<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 §71③> ○ (감 면 율) 취득세 25%, <u>재산세 25%</u> ○ (일몰기한) <u>2022.12.31.</u>	☞ 감면세목(재산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u>재산세 종료</u> ○ (일몰기한) <u>2025.12.31.</u>
<⑪ 별정우체국용 직접 사용 부동산 등§72>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u>2022.12.31.</u>	☞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 개정내용 >

- (①~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고,
 - * 낙후지역 교통인프라 개선 및 물가 안정 등
 - ※ (도시철도공사) '23년부터 적용토록 한 최소납부세제도 '26년부터 적용토록 3년간 적용 유예
- (주)SR의 고속철도차량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신설
- (⑥)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분류체계 유지기간, 국세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2년간 감면 연장
- (⑦)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의 가격이 고가인 점, 보급 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신설
 - ※ (現)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 → (改) 취득세 50% 감면(한도 無)
-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연구 및 검사소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사고 예방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⑨) 물류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 물류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
 - 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역별 여건 및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부여
 - * (개정 前) 법정 35% → (개정 後) 법정 25% + 조례 10%p可
- (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역 공공재로서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
 - 재산세의 경우 사업수익 등 담세력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
- (⑪)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낙후지역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측면 등 감안하여 감면 연장

7 국토·지역개발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74> ○ (감 면 율) - 시행자 : 취득세 50~75% - 조합원 : <u>중전가액限</u> 취득세 100% - 가액초과분 취득세 50~75% ○ (일몰기한) 2022.12.31.	☞ 과표공제는 세법 이관,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 시행자 : 취득세 50~75% - 조합원 : <u>중전가액限</u> 지방세법 이관 - 가액초과분 취득세 50~75% ○ (일몰기한) 2025.12.31.
<②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內 창업기업 등 부동산§75의2>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50% 이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함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50% 이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함 ○ (일몰기한) 2022.12.31.
<③ 인구감소지역內 창업기업 등 부동산 §75의3, §75의5>	☞ 감면 신설 ○ 사업전환 중소기업(§75의3) ※ 위기지역內 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대상 추가 - (감 면 율) <u>취득세 50%</u> <u>재산세 50%(5년)</u> - (일몰기한) 2024.12.31. ○ 창업기업, 사업장 신설·이전기업(§75의5) ※ 신규조문 신설 - (감 면 율) <u>취득세 100%</u> <u>재산세 100%(5년) + 50%(3년)</u> - (일몰기한) 2025.12.31.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토지 중 국가등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등§76②>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4.12.31.
<⑤ 한국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토지 중 국가등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등§77②>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⑥ 산업단지 內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78> ○ (감 면 율) - 시 행 자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재산세) 수도권 外 60%, 조성등이 아닌 직접사용은 감면기간 5년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 * (취득세) 조례로 25%p 추가 可 ※ (대수선 취득세) 감면율 25%, 조례로 15%p 추가 可 ** (재산세) 수도권 外 6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 시 행 자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재산세) 수도권 外 60%, 조성등이 아닌 직접사용은 감면기간 5년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 * (취득세) 조례로 25%p 추가 可 ※ (대수선 취득세) 감면율 25%, 조례로 15%p 추가 可 ** (재산세) 수도권 外 60% ○ (일몰기한) 2025.12.31.
<⑦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동산§78의2>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⑧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78의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100%* * 사업초기 5년 100%, 그 다음 2년 50% 등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100%* * 사업초기 5년 100%, 그 다음 2년 50% 등 ○ (일몰기한) 2025.12.31.
<⑨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부동산§81> ○ 이전공공기관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등록면허세 2016.12.31.) ○ 임직원·공무원 - (감면율) 취득세 62.5%~100% - (일몰기한) 2022.12.31.	☞ 감면 再신설 및 현행 3년 연장 ○ 이전공공기관 ※ 동일 요건으로 감면 재신설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 임직원·공무원 ※ 사후관리 강화 포함 - (감면율) 취득세 62.5%~100% - (일몰기한) 2025.12.31.

< 개정내용 >

- (①)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 조합원 감면 관련 중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

- (②)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內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지역 성장동력 창출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③)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인구유입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 인구감소지역內 창업하는 기업,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④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중 국가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은
 - 공익성 등을 고려 감면을 유지하되, 향후 동일 내용으로 감면을 규정한 他조문과의 일괄적 타당성 평가 위해 2년간 감면 연장
 - (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조성, 분양·임대 또는 직접 사용 부동산과 입주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세에 대한 감면 연장
 - (⑦)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사업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⑧)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 연장
 - (⑨)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은 추가 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종료된 감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감면을 재신설하고,
 - 해당 기관의 임직원·공무원 등이 근무지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감면은 추징 규정을 강화하면서 감면 연장
- ※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II 편 개정내용” 참조

8 공공행정 분야 등

개정 전	개정 후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 부동산§85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② 지방공기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85의2> ○ (감 면 율) - 지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 ※ (예외) 공공임대주택사업 : 취득세 50%* - 무상귀속 부동산 : 재산세 100%* - 지방공단 : 취득세·재산세 100%* - 지방출자출연기관 : 취득세·재산세 50%* * 해당 감면율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무상귀속 부동산 2년 연장) ○ (감 면 율) - 지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 ※ (예외) 공공임대주택사업 : 취득세 50%* - 무상귀속 부동산 : 재산세 100%* - 지방공단 : 취득세·재산세 100%* - 지방출자출연기관 : 취득세·재산세 50%* * 해당 감면율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일몰기한) 2025.12.31. (무상귀속 부동산 2024.12.31.)
<③ 새마을운동조직 등 직접 사용 부동산§88>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④ 정당의 직접 사용 부동산§89>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025.12.31.
<⑤ 마을회등의 부동산, 선박 등§90>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선박 감면은 취득세 限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선박 감면은 취득세 限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025.12.31.

개정 전	개정 후
<⑥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91> ○ (특례내용) 취득세 2%(저율) 세율 적용 등록면허세 100% 감면 ○ (일몰기한) 2022.12.31.	☞ 감면세목(등록면허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특례내용) 취득세 2%(저율) 세율 적용 ※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025.12.31.
<⑦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67> ○ (특례내용)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세율 적용 ※ 국세(법인세) 체계와 동일 ○ (일몰기한) 2022.12.31.	☞ 현행 3년 연장 ○ (특례내용)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세율 적용 ※ 국세(법인세) 체계와 동일 ○ (일몰기한) 2025.12.31.

< 개정내용 >

- (①) 한국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②) 지방공기업 등(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사무 관련성, 공익성 등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③)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④)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⑤) 마을회등의 공동소유 부동산·선박 등에 대한 감면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⑥)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노후화로 인한 이전 계획 중인 점, 담세력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
 - 등록면허세는 행정 수수료적 성격인 점 고려 감면 종료
- (⑦)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비영리 조합법인의 영세성 및 지역 경제 기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례 연장

9 기타

개정 전	개정 후																
<① 직접 사용 범위 §2①8 등> ○ (충척)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u>채차 규정</u>* * “임대는 제외” 문구가 없는 규정에서는 “임대 포함”으로 해석될 여지	☞ 직접 사용 범위 명확화 ○ (충척) + “<u>임대를 제외</u>”토록 명시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규정한 <u>해당 문언 삭제</u>* * 총 11개 개별조문 체계 정비																
<② 매각중여 예외범위 신설 영§1의2> ○ (신설) ※ '21년말 “매각·중여”의 정의를 신설(법 §2①8의2)하면서 그 예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매각·중여 예외범위 규정 ○ <u>상속, 수용, 신탁</u> ※ 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지자체 조례감면 범위 §4②·영§2①> ○ (제한) 법정 감면항목은 조례 확대 不可 * 법에서 정한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⑥대상의 확대 ○ (예외) 일정사유* 해당시 조례감면 확대 可 * 재난의 대응·복구 등 4가지 사유	☞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 (제한) 조례감면 불가한 법정 감면항목* 축소 * 법에서 정한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 확대 ※ ⑥대상 제외 ○ (예외) 조례감면 가능사유 추가* * 지역 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31④>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기준</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40㎡ ↓ & 30년 ↑</td><td>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td></tr> <tr> <td>40㎡ ↑ ~ 60㎡ ↓</td><td>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td></tr> <tr> <td>60㎡ ↑ ~ 85㎡ ↓</td><td>재산세 25%</td></tr> </tbody> </table> ※ 임대기간이 30년이하인 40㎡이하 임대주택은 지침을 통해 감면 적용토록 先조치	감면 기준	감면율	40㎡ ↓ & 30년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40㎡ ↑ ~ 6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60㎡ ↑ ~ 85㎡ ↓	재산세 25%	☞ 감면기준 명확화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기준</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40㎡ ↓ & 30년 ↑</td><td>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td></tr> <tr> <td>~ 60㎡ ↓</td><td>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td></tr> <tr> <td>60㎡ ↑ ~ 85㎡ ↓</td><td>재산세 25%</td></tr> </tbody> </table> ※ 감면기준을 명확화하면서, 부칙상 '22년분에 대한 <u>재산세도 지침과 동일 적용토록 명확화</u>	감면 기준	감면율	40㎡ ↓ & 30년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 6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60㎡ ↑ ~ 85㎡ ↓	재산세 25%
감면 기준	감면율																
40㎡ ↓ & 30년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40㎡ ↑ ~ 6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60㎡ ↑ ~ 85㎡ ↓	재산세 25%																
감면 기준	감면율																
40㎡ ↓ & 30년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 6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																
60㎡ ↑ ~ 85㎡ ↓	재산세 25%																
<⑤ 감면 제외대상 §177> ○ (감면 제외대상) <u>별장</u>,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감면 제외대상 축소 ○ (감면 제외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u>별장에 대해서는 감면 可</u>																

개정 전	개정 후
<⑥ 최소납부세제 배제 대상§177의2①2> ○ (배제 대상) §11①, §84①, §74① 등	☞ 최소납부세제 배제 대상 명확화 ○ (배제 대상) §44②, §74의2① 등 ※ §44②, §74의2①은 배제대상에 추가, §11①·§84①·§74①은 배제대상에서 삭제
<⑦ 중복감면 배제§180> ○ (중복배제의 용어) <u>감면</u> ○ (중복배제의 적용) <u>동일 과세대상</u> ○ (중복배제의 예외) §73, §74, §92, §92의2	☞ 중복특례 배제로 명확화 ○ (중복배제의 용어) <u>특례</u> ○ (중복배제의 적용) <u>동일 과세대상 & 동일 세목</u> ○ (중복배제의 예외) §73, §74의2①, §92, §92의2
<⑧ 지방농수산물공사 등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법률 제15295호 부칙§7>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 2023. 1. 1.	☞ 현행 3년 연장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 2026. 1. 1.

< 개정내용 >

- (①)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명확화하되,
 - 개별 조문에서 임대 자체를 목적 사업으로 감면토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
- (②)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유상·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정요건 “매각·증여”에 해당하나,
 -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속·수용*, 「신탁법」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지방세법 §9③)되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제외
 - * (수용시 매각·증여 예외)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前 취득한 경우 限 인정
- (③) 법정 감면 확대 범위 등을 조정하여 조례 자율성 제고
 -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없는 법정 감면 항목에서 “감면 대상”을 삭제하고,

- 법정 감면 항목에 해당시에도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지역 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 (④) 임대기간이 30년 미만의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50% 감면되도록 명확화
 - ※ 부칙상 적용례를 두어 2022년 부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보완
- (⑤)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서 별장을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감면 제외대상에서도 별장을 제외하여 감면이 가능토록 개선
- (⑥)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44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74의2①)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 현행 면제대상이 아니거나(§11①, §84①), 지특법상 면제대상에서 삭제된 규정(§74①)은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서 삭제
- (⑦) 서울 경감, 중과세 배제 등 지특법에서 정한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그 용어를 “특례”로 명확히 하고,
 - 그 중복 적용의 배제 범위는 동일 과세대상의 동일 세목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보완하며,
 -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대상을 현행화*
 - * (중복 적용 대상) 과표공제 성격의 §74의2①은 추가하고, '23년부터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는 §74는 삭제
- (⑧)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담세력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을 3년간 限 유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특례 신설 · 확대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사회복지법인등 감면대상 확대	▪ (목적)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원 확대 ▪ (대상) 일부 사회복지시설 → <u>全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주민세限)</u>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면제 ▪ (감면내용) - 무료 시설 : 취득세100%·재산세50%*, 주민세 100% - 유료 시설 : 취득세·재산세 25%*, 주민세 100% * 조례로 50%p 추가하여 감면 可 ※ 사회복지시설 중 개정前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가 면제되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칙상 경과조치를 두어 '24년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민세 100%	제22조 (2025.12.31.)											
②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시 감면대상 확대	▪ (목적) 다자녀 양육자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성 제고 ▪ (양육자 사망시 감면대상자) 배우자 → 배우자 + <u>자녀</u>* *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자동차를 그 배우자가 자녀와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록하는 경우 限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제22조의2 (2024.12.31.)											
③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 ※ '22.6.21. 이후 취득한 자부터 소급 적용	▪ (목적) 서민 주거안정 지원 확대 ▪ (감면대상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개정 前</th><th>개정 後</th></tr> </thead> <tbody> <tr> <td>소득기준</td><td>부부합산 7천만원↓</td><td>×</td></tr> <tr> <td>주택가액</td><td>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td><td>12억↓</td></tr> </tbody> </table> ▪ (감면내용) 취득세 100%(200만원 한도)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12억↓	제36조의3 (2025.12.31.)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12억↓											
④ 전공대학 감면 확대	▪ (목적) 대학 간 형평성 제고 및 교육분야 지원 확대 ▪ (감면지원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개정 前</th><th>개정 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평생교육용</td><td>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td><td>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배제)</td></tr> <tr> <td>×</td><td>도시지역분·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면허분 등록면허세 100%</td></tr> <tr> <td>산학협력단</td><td>×</td><td>취득세·재산세 75%</td></tr> </tbody> </table>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평생교육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배제)	×	도시지역분·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면허분 등록면허세 100%	산학협력단	×	취득세·재산세 75%	제36조의3 (2025.12.31.)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평생교육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배제)											
	×	도시지역분·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면허분 등록면허세 100%											
산학협력단	×	취득세·재산세 75%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⑤ SR 감면 신설	▪ (목적)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 지원 ▪ (대상)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 ▪ (감면내용) <u>취득세 25%</u>	제63조제6항 (2025.12.31.)
⑥ 수소전기화물차 감면 신설	▪ (목적) 친환경 분야 보급 활성화 촉진 ▪ (대상) 수소전기화물차를 취득하는 자 ▪ (감면내용) 취득세 50% (한도 無) ※ 개정 前에는 §66④에 따라 140만원 한도로 감면	제66조제5항 (2025.12.31.)
⑦ 반환공여구역 감면 시행	▪ (목적)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창업등을 위해 취득 부동산 - (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58의3④) - (사업장 신설(이전)시 추가요건) 중소기업으로 한정 하고, 사업장 이전의 경우 대도시에서 이전 限 ▪ (감면내용) <u>취득세 100%</u>	제75조의4 (2025.12.31.)
⑧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	▪ (목적)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대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등을 위해 취득 부동산 - (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58의3④) - (사업장 신설(이전)시 추가요건) 사업장 이전의 경우 대도시에서 이전 限 ▪ (감면내용) <u>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 50%(3년)</u> ※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외에도, 인구감소지역內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규정(§75의3)을 통해 지방세 감면토록 개정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일몰기한 2024.12.31.)	제75조의5 (2025.12.31.)
⑨ 이전공공기관 감면 再신설	▪ (목적)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 (대상)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 ▪ (감면내용) <u>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등록면허세 100%</u>	제81조제1항·제2항 (2025.12.31.)

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법 §2①8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직접사용 범위 ○ (총칙) 직접 사용을 <u>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u> ○ (일부 개별조문) “<u>임대는 제외</u>” 토록 재차 규정* * “임대는 제외” 문구가 없는 규정에서는 “임대 포함”으로 해석될 여지	□ 직접사용 범위 <u>명확화</u> ○ (총칙) “임대는 제외”를 명시 ○ (개별조문) “<u>임대는 제외</u>”토록 규정한 문구 삭제* * 총 11개 개별조문 체계 정비

□ 개정내용

-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확화
 - 총칙의 “직접 사용” 정의규정에는 “임대는 제외”를 명시하고, 개별조문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법 §14 등 11개 조문)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별 조문에서 임대를 감면대상 목적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
 - * 지특법 §31의3①, §31의4②, §58의2①2, §59② 등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 해당 사안은 명확화 차원의 개정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 유지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u>(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u>(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4. (생략)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u>(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 ----- ----- ----- ----- ----- ----- ----- ----- 부동산 ----- ----- ----- ----- -----.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 ----- 부동산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 ----- ----- 부동산 ----- ----- ----- -----

개정 전	개정 후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 3. (생략)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 3. (생략)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u>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 3. (생략)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	----- -----.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 ----- ----- <u>부동산</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 ----- -- <u>부동산</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

개정 전	개정 후
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2. (생략)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	----- ----- <u>부동산</u>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 ----- ----- ----- <u>부동산</u> ----- ----- ----- -----.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 ----- ----- ----- <u>부동산</u> ----- ----- ----- ----- -----.

개정 전	개정 후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u>직접 사용</u>(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u>직접 사용</u>(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직접 사용</u>-----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직접 사용</u>----- ----- ----- ----- ----- ----- -----.

개정 전	개정 후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에 대한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 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 용하는 경우	3. ----- ----- ----- -- 용도-----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 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부동산----- ----- ----- ----- -----.
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 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 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 ----- ----- 부동산----- ----- ----- ----- -----.

1 감면대상 부동산에서 임대 제외

- (대상 조문 - 9개 개정) 농협등(§14), 청소년단체(§21), 법률구조법인(§23), 국민건강증진사업자(§40), 대한적십자사(§40의3), 한국환경공단(§47), 국립공원공단(§48), 국민신탁법인(§53), 새마을운동조직(§88)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에서 임대 제외

- (대상 조문 - 1개 개정) 창업중소기업(§58의3)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본문 생략)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추징요건인 ‘다른용도 사용’에 임대 포함

- (대상 조문 - 1개 개정) 농어촌 주택개량(§16), 서민주택(§33), 생초 감면(§36의2·§36의3), 위기지역내 중소기업(§75의3), 주한미군근로자 평택이주(§81의2)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직접 사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조문(§16, §33, §36의2, §36의3, §81의2)은 임대를 추징에 포함하도록 現규정 체계 유지

2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관련 적용요령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자체, 조례 등으로 감면 ○ (제한) 법정 감면항목*은 조례감면 불가 *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⑥대상 등의 확대 ○ (예외) 일정사유* 해당시 조례감면 확대 可 * 재난의 대응·복구 등 4가지 사유	□ 조례 등 <u>감면 가능범위 확대</u> ○ (제한) <u>조례감면 불가능한 법정 감면항목*</u> 축소 *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 확대 ※ ⑥대상 제외 ○ (예외) <u>조례감면 가능사유 추가*</u> * + <u>지역 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u>

□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개선	개선 효과
① 법정 감면항목 (조례 등 불가)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자· <u>대상</u>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자· <u>대상</u>	자율성 확대 (제한 범위 축소)
② 예외 사유 (조례 등 可)	재난 대응·복구,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 <u>지역 역점사업 추진</u>	자율성 확대 (예외사유 추가)

○ 조례 등 감면이 제한되는 ①**법정 감면항목 범위 축소**(법§4②1)

- 지특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대해, 조례로 감면대상* 확대 可

* (감면대상)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 법정 감면항목도 필요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②**예외사유 추가**(영 §2①5)

- 지자체의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부동산정책 등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영 §2②)을 종합 고려

□ 고려사항

- (기본방향) 감면총량 한도(징수액 1.4~1.6%) 및 교부세 패널티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전제로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必
- (고려사항)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감면 신설

조례 감면 신설 시 고려사항 (지특법 시행령 §2② 참고)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정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 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u>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u>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② ----- ----- ----- ---. ----- ----- ----- ----- ----- -----. 1. ----- ----- ----- --- <u>적용대상자</u>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u>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농어촌공사의 농지 등 감면 ○ (감면내용) 사업별 차등 감면 <table><tr><th>법(호)</th><th>대상 사업</th><th>감면율</th></tr><tr><td>1</td><td>농지매매사업 등</td><td rowspan="3">취·재 50% ※ (2호) 농업인 환매 시 취 100%</td></tr><tr><td>1의2</td><td>생산기반지원사업</td></tr><tr><td>2</td><td>경영회생지원사업</td></tr><tr><td>3~5</td><td>그 외 사업</td><td>취 25~50%</td></tr></table> ○ (사후관리) 개별적 규정 無 ○ (일몰기한) '22.12.31.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취·재 50% ※ (2호) 농업인 환매 시 취 100%	1의2	생산기반지원사업	2	경영회생지원사업	3~5	그 외 사업	취 25~50%	□ 감면 재설계, 사후관리 강화 ○ (감면내용) 1호 정비, 1호의2 확대 <table><tr><th>법(호)</th><th>대상 사업</th><th>감면율</th></tr><tr><td>1</td><td>농지매매사업 등</td><td>취 50%</td></tr><tr><td>1의2</td><td>생산기반지원사업</td><td>취50%, 재75%</td></tr><tr><td>2</td><td>경영회생지원사업</td><td rowspan="2">현행과 같음</td></tr><tr><td>3~5</td><td>그 외 사업</td></tr></table> ※ (제1호) 감면사업 및 감면대상 축소, 재산세 종료 등 (제1호의2) 재산세 감면율 확대 ○ (사후관리) 맞춤형 추정요건 신설 ○ (일몰기한) '25.12.31.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취 50%	1의2	생산기반지원사업	취50%, 재75%	2	경영회생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3~5	그 외 사업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취·재 50% ※ (2호) 농업인 환매 시 취 100%																										
1의2	생산기반지원사업																											
2	경영회생지원사업																											
3~5	그 외 사업	취 25~50%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취 50%																										
1의2	생산기반지원사업	취50%, 재75%																										
2	경영회생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3~5	그 외 사업																											

□ 개정내용

- 일부 사업(§13②1.1의2)에 대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편
 - (제1호) 포괄적 감면방식의 제1호는 감면사업·세목 등 정비

- ① (세목) 농지매매사업 등 사업 특성 및 他규정(제3호~제5호)과의
형평성 고려, 소유단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 종료
- ② (감면대상) 농지外 취득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로 한정
 - * (제1호의3 신설) 국가가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同공사에 양여
- ③ (감면사업 축소)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감면토록 개선
 - * 농지취득 부적격자로부터 취득사업(농지법§11), 농지이용증진사업(농지법§15) 등
- ④ (농지 재개발사업) 농지外 용도로 개발하는 영리 사업에 해당하는 점
고려, 그 성격이 유사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제4호) 수준 축소*
 - * 현행(제1호)취득세·재산세 50% 감면 → 개선(제4호의2 신설) 취득세限 25% 감면

- (제1호의2) 국가를 대행해 농업인에게 양수장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공익성 고려, 재산세 감면 지원(50%→75%) 확대
- 그 외 사업(§13②2·3·4·5)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 **현행 감면 연장**
- 한편, **同공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 해당 개별 조문(§13②단서)에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농업법인·전업농육성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시 취득세 추정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제1호 개정 내용 >

사업	감면대상		감면율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공사법§18) 농지매매사업	부동산	농 지 ¹⁾	취득세 50% 재산세 50% ³⁾	취득세 50%
(공사법§20) 간척농지 매입·매도				
(공사법§24)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부동산 ¹⁻²⁾		취득세 25% ⁴⁾
(공사법§44) 조성토지 처분 특례		부동산 ¹⁻³⁾		
(농지법) 농지	농지(사업무관)	농지(일부사업) ²⁾		취득세 50%

1) (감면물건 정비) 농지 관련 사업은 감면물건을 부동산에서 농지로 한정·명확화
 ※ 농지外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별도규정 신설·이관(1-2: 제4호의2, 1-3: 제1호의3)

2) (감면대상 정비) 농어촌공사 소유 쏙농지 → 감면 필요한 3개사업 농지限*

* 농지취득 부적격자로부터 취득(농지법§11), 농지이용증진사업(농지법§15),
 공유수면매립사업(공유수면법§46)

3) (감면세목 정비) 사업특성상 보유단계의 지원 필요성 低 → 재산세 감면 종료

4) (형평성 제고) 재개발사업 → 유사성격의 생활환경정비사업(제4호) 수준으로 정비

- 다만, 사후관리 신설 규정은 '23. 1. 1.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3)

참고

취득세 추정 예시

- ✓ (1호·1호의3·5호 : 농지매매사업 등) 농업인·농업법인·전업농육성대상자 (이하 “농업인”) 외의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증여(이하 “이전”이라 함) 등
- ✓ (1호의2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생산기반시설外 용도 사용 또는 이전시
- ✓ (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 회생대상자 외의 자에게 임대 또는 이전시
- ✓ (3호 : 과원규모화 사업)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외의 자에게 임대 또는 이전시
- ✓ (4호 : 생활환경정비사업) 일반적 추정규정 적용(직접 未사용, 이전 등)
- ✓ (4호의2 : 농지재개발사업) 일반적 추정규정 적용(직접 未사용, 이전 등)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② ----- -----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개정 전	개정 후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u>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u>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8조·제20조, 「농지법」 제11조·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u>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u> <신 설> 2.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u>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u>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 5.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3조(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농지법령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단서생략)
-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농지법」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2. 한국농어촌공사
 -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 「농지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 「농지법」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

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淤: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 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할·합병(이하 “교환·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농어촌공사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준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세목 축소, 최소납부배제 등(법 § 15②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u>등록면허세 100%*</u> *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최소납부 적용시기) '23.1.1. ☐ (일몰기한) '22.12.31.	☐ 감면세목 조정 및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 <u>등록면허세 종료</u> *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투자비율 ☐ (최소납부 적용시기) '26.1.1.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 등을 위해 감면을 연장 하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인 등록면허세 감면은 종료
- '23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최소납부세제도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한 세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26년부터 적용토록 3년간限 유예
 ※ (법률 제15295호 부칙 §7.3호* 개정) 최소납부 적용시기 : '23.1.1. → '26.1.1.
 * 담세력이 열악한 도시철도공사(§63⑤)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적용 유예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② -----

개정 전	개정 후
다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1. (생략)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생략)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2. (생략)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u>2023년 1월 1일</u> 4. (생략)	----- ----- ----- ----- ----- ----- <u>2025년 12월 31일</u>-----.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2026년 1월 1일</u> 4. (현행과 같음)

5

직장어린이집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법 § 19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직장 어린이집 <u>취득세 감면</u> ○ (감면 대상 및 내용) - 직접 사용 : 취득세 100% 감면 ※ <u>위탁운영시 취득세 감면 배제</u> ○ (일몰기한) 2024.12.31.	☐ <u>취득세 감면대상 확대</u> ○ (감면 대상 및 내용) - 직접 사용 : 취득세 100% 감면 - <u>위탁 운영 : 취득세 50% 감면</u>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되,
-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는 차등을 두어 50% 감면을 적용
- ※ 재산세는 직접 사용에서 예외를 두어 既감면 中

세 목	개정 前		⇒	개정 後	
	직접사용	위탁운영		직접사용	위탁운영
취득세	100% 감면	-		100% 감면	50% 경감
재산세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u>면제한다</u> .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 ----- ----- ----- ----- ----- <u>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법인限 ☐ (<u>일부</u> 사회복지시설) - <u>취득세 100%</u> - <u>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u> ☐ (<u>신설</u>)	☐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u>개정 전과 동일</u> ☐ (<u>全</u> 사회복지시설) - <u>취득세</u> <u>유료시설 25%*, 무료시설 100%</u> - <u>재산세</u> <u>유료시설 25%*, 무료시설 50%*</u> * 조례로 50%p 추가감면 可 ※ 개정 전부터 감면된 시설은 '24년 까지 종전 감면 적용 ☐ (<u>장애인활동지원기관</u>) - <u>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u>
☐ (일몰기한) '22.12.31.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등 감면을 재설계하고 3년간 감면 연장
- 현재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법률로 상향하며 차등적인 감면율(취득세·재산세)을 적용

- (사회복지시설) 4개 사회복지시설¹⁾에서 **소사회복지시설²⁾**로 확대 지원하되, **감면세목 및 감면율 재설계³⁾**

1) 무료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부자·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3)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 대상		4개 시설 한	소 사회복지시설
감 면 세 목	▶ 취득세·재산세	100%	• 법정감면율 : 유·무료 차등 - (무료) 취 100%, 재 50% (유료) 취 25%, 재 25% • 조례감면율 : 법정 + 50%p 可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역지원시설세	100%	-
	▶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100%

※ 기존에 감면받은 4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부동산은 '24년까지 종전대로 적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정요건을 갖추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 신설
- (사회복지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 종전과 동일한 감면 적용 및 연장*

* 등록면허세 감면은 사회복지법인 한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감면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하는 등 세부요건* 규정(영§10①②⑤)

* ①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특정단체 명칭이므로 영에서 구체화

②⑤ (②사회복지시설, ⑤장애인활동지원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 감면대상 관련 조문 재구성 체계도 >

유형	감면대상	현행	개정
1	사회복지법인	영 §10①1	법 §22①1
	사회복지시설	영 §10①2전단	법 §22①2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신설)	법 §22⑤
	↳ 시설·기관 요건	영 §10①2후단 및 가~다목	영 §10②⑤
3	한국한센복지협회	영 §10①1	법 §22①1*, 영 §10①

* (법) 한센인의 권익·복지 증진·개선 등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조문체계를 근거법¹⁾ 및 영²⁾ 개정 사항에 부합토록 재정비

- 1) 시행령의 근거 법조항 변경사항* 반영 * 現법 § 22②,③→^改법 § 22③,⑤
 ※ (영 § 10③ 등 4건)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 2) 신설 개정(現영 § 10①→^改영 § 10①②⑤)되는 시행령의 영향을 반영,
 이하 항번호 순차적 수정 (現영 § 10②~③,④→^改영 § 10③~④,⑥)

참고1 **시행령 §10 조문 재구성 체계도**

개정 前 (영 §10)	개정 後 (법 §22, 영 §10로 개편)								
① 감면대상 및 세부요건 (영 §10①) 1. 사회복지법인 2. (본문) 4개 사회복지시설 (단서 및 각목) 법인·개인별 요건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table border="1"> <tr> <th>①-1. 감면대상 (법 §22①)</th><th>①-2. 세부요건 (영 §10①②⑤)</th></tr> <tr> <td>1. 사회복지법인</td><td>-</td></tr> <tr> <td>2. 쉼사회복지시설 (현행 영§10①본문)</td><td>② 사회복지시설의 법인·개인별 요건 (현행 영§10① 단서 및 각목)</td></tr> <tr> <td>1. 한센인 권익·복지를 위한 시행령의 단체 (법 §22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td><td>① 사단법인 한국 한센복지협회 ⑤ 활동지원기관의 법인·개인별 요건</td></tr> </table>	①-1. 감면대상 (법 §22①)	①-2. 세부요건 (영 §10①②⑤)	1. 사회복지법인	-	2. 쉼사회복지시설 (현행 영§10①본문)	② 사회복지시설의 법인·개인별 요건 (현행 영§10① 단서 및 각목)	1. 한센인 권익·복지를 위한 시행령의 단체 (법 §22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① 사단법인 한국 한센복지협회 ⑤ 활동지원기관의 법인·개인별 요건
①-1. 감면대상 (법 §22①)	①-2. 세부요건 (영 §10①②⑤)								
1. 사회복지법인	-								
2. 쉼사회복지시설 (현행 영§10①본문)	② 사회복지시설의 법인·개인별 요건 (현행 영§10① 단서 및 각목)								
1. 한센인 권익·복지를 위한 시행령의 단체 (법 §22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① 사단법인 한국 한센복지협회 ⑤ 활동지원기관의 법인·개인별 요건								
② 기타 감면요건 (영 §10②) 재산세 감면부속토지 범위 ※ (기타) 위임법 조항개정 반영 포함 (영 §10③) 등록면허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위임법 조항개정 반영 포함 (영 §10④) 주민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위임법 조항개정 반영 포함	② 기타 감면요건 (영 §10③) 재산세 감면부속토지 범위 ※ (기타) 법 제22조제2항 → 법 제22조제3항 (영 §10④) 등록면허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법 제22조제1항 → 법 제22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 → 법 제22조제5항 (영 §10⑥) 주민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법 제22조제3항 → 법 제22조제5항								

(개정 시행령 §10②⑤)

-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단체)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단체의 조직·운영 규정 有,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소유·관리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적용요령

① 적용시기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부칙 §2)

②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유·무료)를 기준으로 ㉮차등 감면 지원 ㉮: 비영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지특법 시행령§10②⑤) ㉮: 일부 소수 인원에게만 비용을 받는 경우도 해당 ㉮: 실비수준의 비용인지와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유료사용' ㉮: 유료시설은 취·재 25%, 무료시설은 취 100%·재 50% * 대법원 92누15505 1993.9.14. 판결 등 다수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함
---------------------	---

분류	유·무료 판단 방법	사후관리(추징 또는 부과)
취득세	▶ 지방세 감면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검토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확인 ▶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결산서 검토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추가 검토 병행
재산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조회 ▶ 사회복지시설의 당해연도 세입 예산서 및 직전년도 결산서 확인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추가 검토 병행	▶ 당해연도 결산서 등 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감면 시행	

※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조례 감면	▶ 감면대상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감면율(취득세·재산세 한정)에 최대 50%p의 조례감면율을 더해 지원 가능 ※ 최소납부세제 대상(15%) 및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지특령 부칙 §2 참조)
경과 규정	▶ 종전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동일 감면지원 (부칙§9②) * 종전 감면대상 4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로서, 종전 감면 규정에 따라 '22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았거나 '22. 6. 2. ~ 12. 31. 중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

참고2 사회복지시설 유·무료 구분 예시

< 유형 설명 ('22년 기준) >

A유형 시설 :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시설

B유형 시설 :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실비 비용 등을 받는 경우가 있어 유무료 판단이 필요한 시설

C유형 시설 :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는 유료시설

구 분	사회복지시설 유형
A유형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피해장애인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모자·부자·미혼모·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대안교육위탁기관,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B유형 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다함께돌봄센터
C유형 시설	A유형 시설 및 B유형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 B유형 시설의 경우 “적용요령”에 따라 유·무료 시설 여부를 판단하되, A유형 혹은 C유형 시설이더라도 필요시 별도 확인	

③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감면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지특법시행령§10②⑤)
- (적용방법) 감면 세목, 감면율 등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운영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의 권익·복지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 ----- ----- ----- -----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 -----

개정 전	개정 후
<u>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u>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u>	----- ----- ----- ----- ----- <u>감면</u>-----.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⑤ ----- ----- <u>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u>

개정 전	개정 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u>사회복지사업법</u>」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사회복지사업법</u>」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2. (생략)	<u>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u>에 대해서는 ----- <u>2025년 12월 31일</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u>사회복지법인</u>----- ----- <u>사회복지시설</u>----- ----- <u>2025년 12월 31일</u>-----. ⑧ ----- 제7항----- ----- <u>사회복지법인</u>----- -----. 1. 2.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은 경우(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신 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전	개정 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로 재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 ----- ----- ----- ----- ----- ----- -----.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 ----- ----- -----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 ----- -----.
<신 설>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

개정 전	개정 후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u>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u> <u>란 제2항 각 호의 법인·단체를</u> <u>말한다.</u> ⑥ 법 제22조제5항 ----- ----- ----- ----- ----- ----- ----- ----- ----- ----- -----.

■ 시행령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제22조제1항·제4항·제7항·제8항”으로 한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시 감면 범위 ☐ (감면대상자) 배우자 限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시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자) 배우자 + <u>자녀</u> ※ 법정상속분대로 등록하는 경우 限

□ 개정내용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 감면받은 자동차를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도록 요건 완화

※ (완화 대상)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상속취득이 어려운 경우

* (민법 §921) 미성년자녀는 특별대리인의 미선임·부동의시 배우자 단독명의로 협의상속 不 →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취득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확대되는 감면 대상자 범위 >

취득 원인	감면 대상자	감면 요건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자녀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취득限
그 외	양육자 限	⇐ 자녀 공동취득시 감면 배제

① (인적·물적요건) 다자녀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감면받은 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감면받은 자동차를 상속 취득하는 경우 限

② (지분 요건) 민법 §1009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는 경우 限

※ 그 외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限 감면 적용됨에 유의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u>배우자</u> 외의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u>.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u> ----- -----.
1. ~ 4. (생략)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개정 전	개정 후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 2. (생략) <신설>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 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 (40㎡ 초과~60㎡ 이하) 50% 감면 ☐ (60㎡ 초과~85㎡ 이하) 25% 감면	☐ <u>감면요건 명확화</u> ☐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 (60㎡ 이하) 50% 감면 ☐ (60㎡ 초과~85㎡ 이하) 25% 감면

□ 개정내용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은 전용 면적(85㎡↓) 등을 기준으로 차등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 임대기간 30년 미만인 4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50%)이 적용되어 누락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화***

* '21년말 자구정비 차원의 개정시 감면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발생하였으나
⇒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토록 既조치(지방세특례제도과-1091, 2022.5.19.)

□ 적용요령

- '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4)

※ 既감면 적용 후 부칙상 소급토록 명확화한 사안으로 과세실무 동일 유지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u>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u>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4조(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요건) - 주택가액 3억(수도권 4억)↓ &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감면율) 주택가액 기준 차등 적용 - 1.5억↓ 주택 : 취득세 100% - 1.5억↑ 주택 : 취득세 50% ☐ (일몰기한) '23.12.31.	☐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요건 완화) - 주택가액 12억↓ ※ 소득 기준 폐지 ☐ (감면율) 취득세 100%(200만원 限)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 기한을 2년 연장('23년말→'25년말)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10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無)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구 분	개정 前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개정 後
×
12억↓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외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적용요령

○ '22. 6. 2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5)

※ 소급 적용됨에 따라, '22.6.21. 이후 취득한 자로서 감면대상으로 추가된 자 및 감면액 증액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 조치 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서식^{참고} 활용

※ 위택스 지방세자료실에 게재 완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고시 예정)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 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u>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u>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 ----- ----- ----- ----- ----- ----- ----- ----- -----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 ----- ----- -----

개정 전	개정 후
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 ----- ----- ----- ----- ----- 2025년 12월 31일----- ----- -----. ----- -----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개정 전	개정 후
<u>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⑥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 <u>무주택자</u> ----- ----- -----. <u><삭 제></u>

■ 법률 부칙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소재지	주택가격(거래가격)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뒤쪽 참조)	

관계 증명 서류

①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②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아니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 사실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그 배우자			

Ⅱ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1호만 소유하고 있음 []처분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Ⅲ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이 추가되어 추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10 대한적십자사 감면 확대(법 § 40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u>25%</u> ☐ (일몰기한) <u>2022.12.31.</u>	☐ <u>감면율 상향</u>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u>50%</u> ☐ (일몰기한) <u>2023.12.31.</u>

☐ 개정내용

-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상향(25%→50%)하면서 그 일몰을 1년 연장('22년말→'23년말)

* 고유업무에서 의료업은 제외(의료업은 제1호에 따라 별도 감면율 적용)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u>부동산</u>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 ----- - <u>부동산</u> ----- -----

개정 전	개정 후
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25</u> 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u>25</u> 를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3. ----- ----- ----- ----- <u>50</u> 을, ----- ----- ----- <u>50</u> 을 각각 <u>2023년 12월 31일</u> -----.

11 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특례 확대(법 § 44②③, 법 § 177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내용) - 교육용 : 취·재 100%(최소납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지방세 감면 확대 ☐ (감면내용) - 교육용 : 취·재 100%(최소납부 배제) 도·지·주·등 100% - 산학협력단 : 취·재 75%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특례를 확대하고,

※ (취·재)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그 외) 면제세목 확대(도·지·주·등)

- 산학협력단*이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75% 감면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限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교 육 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 배제)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면허분등록면허세 100%
산학협력단	×	취득세·재산세 75%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다만, 산학협력단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전공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산학협력법」 개정 선행 필요*하므로
 - * 현행 「산학협력법」상 전공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不
 - 관련법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감면 적용 可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 ----- 조 에서 -----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전	개정 후
	<u>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u>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u> <u>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u>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3. <u>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u> ③ <u>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12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법 § 46)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 (기본 감면율) 기업규모별 차등 - 취득세 35~60%, 재산세 35~50% ☐ (추가 감면율)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해당시: 기본감면율 + 10%p ☐ (일몰기한) '22.12.31.	☐ <u>신성장 등 분야 감면율 상향</u> ☐ (기본 감면율) 개정전과 동일 ☐ (추가 감면율)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해당시: 기본감면율 + <u>15%p</u>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기업규모별 차등 감면을 적용하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해당시 일정을 추가 감면
 -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5%p(10%p→15%p) 상향

대기업 (§46②)	중견기업 (§46①)	초기 중견기업 (§46③)	중소기업 (§46④)
취·재 35%	취·재 50%	취 60%, 재 50%	
※ 대기업은 과밀억제권역외 限 감면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추가 감면 : +10%p ⇒ **+15%p**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

-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참조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u>100분의 45</u>]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45</u>)를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① ----- ----- ----- ----- ----- ----- ----- ----- ----- ----- ----- <u>100분의 50</u> ----- <u>0</u> ----- ----- ----- ----- ----- <u>100분의 50</u> ----- ----- <u>2025년 12월 31일</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	②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45</u>)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45</u>)를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60</u>)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60</u>)을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	----- ----- ----- ----- <u>100분의 50</u> ----- ----- ----- ----- ----- ----- <u>100분의 50</u> ----- <u>2025년 12월 31일</u> ----- -. ③ ----- ----- ----- ----- ----- ----- ----- <u>100분의 65</u> ----- ----- ----- ----- ----- <u>100분의 65</u> ----- <u>2025년 12월 31일</u> -----. ④ ----- ----- ----- -----

개정 전	개정 후
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70</u>)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60</u>)을 각각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⑤ (생략)	----- ----- ----- ----- <u>100분의 75</u>----- ----- ----- ----- ----- ----- ----- <u>경우에는</u> <u>100분의 65</u>----- <u>2025년 12월 31일</u>-----. ⑤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개별 사후관리 규정 無 ☐ <신 설>	☐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조성계획 승인 취소시, 일정 기간내 미조성 등의 경우 추징

□ 개정내용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단계별·유형별 추징규정 신설
 - (조성단계)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 (준공단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준공 後 사용단계) 사용 유형별 세분하여 사후관리
 - ① (쫄 대상)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② (직접사용 대상)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6)

〈 추 징 요 건 〉

- ✓ (조성계획 승인 실효 또는 취소시) 관광진흥법 §56②¹⁾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같은 법 §56③²⁾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취소 명령 可
- ✓ (조성 준공 유예기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 ✓ (조성 준공 후 사용 등)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시행자 직접사용시 의무기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 ----- <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u>
<u><신 설></u>	<u>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u>
<u><신 설></u>	<u>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

개정 전	개정 후
② ~ ⑥ (생 략)	<u>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6조(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광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①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 감면 ☐ (감면율) <u>취득세 37.5%</u> <u>재산세 37.5%</u> ☐ (일몰기한) '22.12.31.	☐ 감면 확대 등 재설계 ☐ (감면율) <u>취득세 50%</u> <u>재산세 50%*</u> * (법정)35% + (조례)15%限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조정
 - 취득세 감면율은 35%에서 50%로 상향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 재산세에 대해서는 법정 감면율은 35%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최대 15%p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④ -----

개정 전	개정 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 ----- ----- ----- <u>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u> -----.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후단 신설>	2. ----- ----- ----- ----- <u>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u> ----- ----- <u>.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u> <u>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u>

15 지식산업센터 감면 재설계 및 사후관리 강화(법 § 5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식산업센터 감면 ☐ (감면내용) - 설 립 자 : 취 35%, <u>재 37.5%</u> - 입주기업 : <u>취 50%</u> , <u>재 37.5%</u> ☐ (사후관리) <u>포괄적 규정 방식</u> ☐ (일몰기한) ' <u>22.12.31.</u>	☐ <u>감면 재설계, 사후관리 강화</u> ☐ (감면내용) - 설 립 자 : 취 35%, <u>재 35%(5년)</u> - 입주기업 : <u>취 35%</u> , <u>재 35%(5년)</u> ☐ (사후관리 강화) <u>사업별 구체화</u> ☐ (일몰기한) ' <u>25.12.31.</u>

☐ 개정내용

① 감면 재설계

- (취득세)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35%로 축소
- (재산세) ①감면율을 35%로 축소하면서 ②5년간만 감면 적용

세 목	개정 前		개정 後	
	설립자	입주기업	설립자	입주기업
취득세	35%	<u>50%</u>	35%	<u>35%</u>
재산세	<u>37.5%</u>	<u>37.5%</u>	<u>35%(5년限)</u>	<u>35%(5년限)</u>

※ (재산세 5년限) 종전 취득자에 대해서도 '23년부터 5년간 동일 특례지원

② 사후관리 강화

- (시행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감면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구체화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직접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未착공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未착공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사업시설용 직접 未사용
분양 임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他용도사용	·직접 사용기간 4년 이내 매각·증여·他용도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未착공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설용 분양·임대 않거나 他용도사용

○ (입주기업) 他감면과의 정합성·형평성 등 고려하여 합리적 재설계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직접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직접 未사용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他용도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직접 未사용 ·직접 사용기간 4년 이내 매각·증여·他용도사용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부칙 §2)
 - 5년限 35% 경감토록 한 재산세 개정 사항은 개정前 취득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23. 1. 1.부터 5년간 적용(부칙 §8)
- 한편, '23. 1. 1. 전에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종전의 추징규정 적용(부칙 §10)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2년 12월 31</u> 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5년 12월 31</u> 일-----.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 ----- ----- ----- ----- ----- ----- ----- ----- -----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 -----.
가.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u>	가. <u>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나. <u>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u>	1)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u> 2)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 3)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나. <u>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1)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u> 2) <u>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u>

개정 전	개정 후
	<u>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의 1,000분의 375</u> 를 경감한다.	2. ----- ----- ----- --- <u>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u>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 ----- ----- ----- ----- ----- ----- -----.
1.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50</u> 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1. <u>2025년 12월 31일</u> ----- ----- ----- ----- <u>35</u> 를 ----- -- . ----- -----

개정 전	개정 후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나.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u> -----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2. ----- ----- --- <u>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u>

■ 법률 부칙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35를 경감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 등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 SR 고속철도차량 감면 신설(법 § 63⑥)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SR 고속철도차량 감면 신설 ○ (대상자) 공공기관으로서 & 철도사업면허 받은자 ○ (감면내용) 고속철도차량의 취득세 25%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 신설

* (주식회사 에스알) '13년 철도사업 면허 취득, '19년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신 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의 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7 수소전기화물차 감면 신설(법 § 66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수소전기화물차 감면 신설 ○ (대상자) 수소전기화물차를 취득하는 자 ○ (감면내용) 취득세 50%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수소전기화물차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간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66④)을 통해 140만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하였으나
- 해당 화물차는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신설(§66⑤) 하여 '25년까지 취득세 특례(감면율 50%, 한도 無) 지원토록 개정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④ ----- -----

개정 전	개정 후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u>고시된 자동차</u>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u><신 설></u>	----- ----- ----- <u>고시</u> <u>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u> <u>동차는 제외한다)</u> ----- ----- ----- ----- -----. ⑤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u> <u>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 <u>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u> <u>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u> <u>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u> <u>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u> <u>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u> <u>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u> <u>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18 물류단지 감면 조례 자율성 확대(법 § 71①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물류단지 시행자·입주기업 감면 ☐ (감면내용) - 시 행 자 : 취 35%, 재 35% - 입주기업 : 취 50%, 재 35%(5년) ☐ (일몰기한) '22.12.31.	☐ 시행자 감면 조례 자율성 확대 ☐ (감면내용) - <u>시 행 자</u> : 취 35%, <u>재 25%*</u> * <u>조례로 10%p까지 추가하여 최대 35% 可</u> - 입주기업 : 개정 전과 동일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35%에서 25%로 축소하여 조정($\Delta 10\%p$)하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해당 재산세의 감면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조례 자율성 강화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개정 전	개정 후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후단 신설>	-----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25- ---- 2025년 12월 31일-----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② ----- ----- ----- ----- ----- ----- ----- 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 ----- ----- ----- .

19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감면세목 축소(법 § 71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감면 ☐ (감면내용) 취득세· <u>재산세</u> 25% ☐ (일몰기한) '22.12.31.	☐ 감면세목 정비 ☐ (감면내용) 취득세 25% ※ <u>재산세</u>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간 연장하여 지속 지원하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 종료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③ ----- ----- ----- ----- -----

개정 전	개정 후
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하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생략)	----- ----- ----- ----- -----. 1.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2. (현행과 같음)

※ (§71③2) 202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일몰 종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과표산정 방식) <u>지특법</u> 규정 ※ 지특법 §74①②, 지특령 §35①② ☐ (원조합원 1가구1주택 감면) <u>청산금 부담자</u> ☐ (그 外) 취득세 50~100% 감면 ☐ (일몰기한) '22.12.31.	☐ 감면체계 정비 ☐ (과표산정 방식) <u>지방세법</u> 규정 ※ 지특법령 삭제 → 지방세법 이관 ☐ (원조합원 1가구1주택 감면) <u>청산금 부담 유무 무관</u> ☐ (그 外) 개정 전과 동일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해당 과표공제 방식을 규정하던 법 §74①②, 영§35①②을 삭제하고,
 - 원조합원은 청산금 부담 유무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지방세법 이관에 따라 청산금 미부담자도 과세로 전환되는 점 고려

- 그 外 규정에 대해서는 '25년말까지 3년간 감면 연장

조문	사업	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74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보류지	취 75
§74④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대지조성 목적 취득 주택	취 75
			체비지·보류지	
		소유자	직접개량 또는 85㎡이하의 주택	취 100
§74⑤	재개발사업	시행자	대지조성 목적 취득 부동산	취 50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소유자	60㎡이하 주택	취 75
			60~85㎡이하 주택	취 50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다만, '23. 1. 1. 전에 환지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 (부칙 §11①) '23. 1. 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74①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고,
 - (부칙 §11②) 부과되는 자는 종전의 §74⑤3에 따라 취득세 경감
- 또한, '23. 1. 1. 전에 §74⑤3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부칙 §11②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에는
 - §74⑤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추정규정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u>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u> <u>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u> <u>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u> <u>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u>	<u><삭 제></u> <u>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u> -----

개정 전	개정 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⑤ <u>재개발사업</u>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 <u>2025년 12월 31일</u>-----. ④ -----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u>재개발사업</u>(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u>2025년 12월 31일</u>-----.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나. (생략)	3. 재개발사업----- ----- ----- ----- 주택-----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 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u>법 제74조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u>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삭제>
② <u>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u>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사업전환 중소기업(법§75의3) - (감면내용) <u>취득세 50%, 재산세 50%(5년)</u> - (일몰기한) '24.12.31. ○ 창업 기업,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법§75의5, 영§35의6) - (감면내용) <u>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 50%(3년)</u>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토록 규정 신설(법 §75의5)

*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최초 5년간 100% 감면 + 이후 3년간 50% 감면

< 신설 법규정 >

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사업장을 신설(③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하 생략)

- (감면요건) 공통요건(초기업) 및 추가요건(사업장이전기업) 규정(영§35의6)

- ✓ (공통요건) ❶❷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58의3④)을 영위할 것
- ✓ (추가요건) ❹사업장 이전 기업은,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일 것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및 경기 일부)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영 §39)

- (창업 기업) 고용·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법§58의3④) 限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정보통신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시설 관리·경비·보안·행사대행 등 지원서비스업 ⑦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⑧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⑨물류산업 ⑩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관광 숙박·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⑫전시산업 등 12개 대분류

- (사업장 신설·이전기업) 창업기업과 업종요건 동일 적용,
이전(移轉) 사업장의 경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옮겨 온 사업장에 限

감 면 요 건	구 분	❶ 창업기업	사업장 설치 기업	
			❷ 신설	❸ 이전
	업 종	제조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과 동일		
	지 역	-		대도시에서 이전限

-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한 중소기업도 대해서도 감면*이 지원되도록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추가(법§75의3)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 可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75의5 재산세 감면은 2023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1. · 2. (생 략)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 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개정 전	개정 후
	<u>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 <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u> <u>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u>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에 따라 고시된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LH 등이 소유한 국가등에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등 감면 ☐ (감면대상자) LH, 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 ☐ (감면내용)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 배제 ☐ (일몰기한) '22.12.31.	☐ 현행 감면 <u>2년 연장</u> ☐ (감면대상자) LH, 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 ☐ (감면내용)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 배제 ☐ (일몰기한) ' <u>24.12.31.</u>

□ 개정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의 부동산¹⁾ 중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물 등²⁾에 대한 감면의 일몰 2년 연장

1)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內 부동산 限

2)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동일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他조문(§13③)과 일몰을 맞추어 향후 연장
여부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4년까지 2년간만 연장함에 유의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전	개정 후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지방세를 감면한다. 1. ~ 3. (생략)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u>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u>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u>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u>재산세를</u> ----- -----. -----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이전공공기관 감면(일몰 既 종료)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등록면허세 100% 감면 ☐ (일몰기한) '17.12.31. ※ 등록면허세는 '16.12.31.	☐ 이전공공기관 감면 再신설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등록면허세 100% 감면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17년말 일몰이 종료되었으나,
- 최근 추가적으로 지방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료된 내용과 동일요건으로 감면 재신설*
- * (취득세·재산세 : '23.1.1.이후 취득 부동산限)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등록면허세 : '23.1.1.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限) 100% 감면

□ 적용요령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3.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7①)하고,
- 등록면허세 감면은 '23. 1. 1.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부칙 §7②)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법률 부칙

제7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사후관리 ○ (추징요건) <u>매각·증여</u> - 이전일(업무개시일) 前 매각·증여 - 이전일(취득일) 2년 이내 매각·증여 ○ 추징제외하는 정당한 사유 - 사망, 혼인, 정년퇴직, 파견근무, <u>해외이주, 부처교류</u>	□ 감면 사후관리 강화 ○ (추징요건 확대) + <u>상시거주, 他용도</u> - 개정전과 동일 - 취득일(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 未개시 - 상시거주 3년미만 상태에서 매각·증여·他용도사용 ○ <u>정당한 사유 축소</u> - 사망, 혼인, 정년퇴직, 파견근무* ※ <u>해외이주, 부처교류 삭제</u> * <u>파견근무는 상시거주, 他용도 사용에 한해 정당한 사유 인정</u>

□ 개정내용

-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강화
- 매각·증여 外에도 일정 기간 내 상시거주하지 않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하고,
 -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를 축소*

* (개정 前) 사망, 혼인, 정년퇴직, 파견근무, 해외이주, 부처교류 →
(개정 後) 사망, 혼인, 정년퇴직, 파견근무

※ 파견근무는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 인정, 제1호와 제3호의 매각·증여의 경우 추징

< 개정 前, 後 사후관리 규정 비교 (§81④) >

개정 前		개정 後	
추징 요건	추징 제외	추징 요건	추징 제외
매각 증여 ■ 이전일·업무개시일 전 매각·증여	사망 혼인 정년퇴직 파견근무 해외이주 부처교류	매각 증여 ■ 이전일·업무개시일 전 매각·증여 ■ <u>상시거주 3년미만</u> 매각·증여	사망 혼인 정년퇴직
■ 이전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		他용도 사용 ■ <u>상시거주 3년미만 다른용도(임대) 사용</u>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		상시 거주 ■ <u>취득일* 3개월 이내 상시거주 미이행</u> * 이전일이 늦은 경우 이전일	사망 혼인 정년퇴직 파견근무

- 제5항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제4항의 동일 추징규정을 적용토록 규정 신설*

* 제4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을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날’로 보아 동일 적용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하되,
 - '23. 1. 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부칙 §12)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	③ -----

개정 전	개정 후
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1. · 2.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u>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u>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u><단서 신설></u>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 가. <u>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u>	----- ----- ----- ----- ----- <u>2025년 12월 31일</u>----- -----. 1. · 2. (현행과 같음) ④ ----- ----- <u>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u>----- ----- ----- ----- ----- <u>. 다만,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1. (현행과 같음) 2. <u>주택을 취득한 날(이전일이 취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해당 이전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u>

개정 전	개정 후
<u>나. 주택의 취득일</u> <u><신 설></u> ⑤ (생 략) <u><신 설></u>	<u>아니한 경우</u> <u>3.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u>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은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은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날’로 본다.</u>

■ 법률 부칙

제12조(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5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감면세목 축소(법 § 9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 감면 ☐ (특례내용) - 취득세 특례세율(2%) 적용 - <u>등록면허세 100% 감면</u> ☐ (일몰기한) '22.12.31.	☐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 감면 ☐ (특례내용) - 취득세 특례세율(2%) 적용 ※ <u>등록면허세 감면 종료</u> ☐ (일몰기한) '25.12.31.

☐ 개정내용

- 노후화로 인한 이전 계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저율세율 적용 특례는 연장하되,
-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인 등록면허세 감면은 종료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개정 후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 11조제1항의 <u>세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u> 1. ~ 3. (생략)	----- ----- <u>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 제외대상 ☐ <u>별장</u>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감면 제외대상 <u>축소</u>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개정내용

-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사치성재산)에서 별장이 제외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감면 제외대상*에서도 별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사치성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해 감면 적용이 불가하도록 규정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 ----- ----- -----.

개정 전	개정 후
1. <u>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u> <u>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u> <u>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u> <u>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u> <u>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u> <u>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u> <u>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u> <u>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u> <u>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u> <u>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u> <u>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u> <u>「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u> <u>3항에 따른다.</u>	<삭 제>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대상 ☐ §11①, §74①, §84① ☐ (배제대상에 추가)	☐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 <u>명확화</u> ☐ (배제대상에서 <u>삭제</u>) ☐ §44②, §74의2① ※ 그 외 배제대상은 개정전과 동일

□ 개정내용

- (전공대학 추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1)에 대해서는 최소납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 그 성격이 유사한 전공대학의 교육용 부동산(§44②)에 대하여도 '23년부터 동일한 특례가 지원되도록 최소납부 배제대상에 추가
- (과표공제 성격 추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74의2①)은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 그 성격이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토지수용 대체 취득 감면(§73)과 유사한 점을 고려, 최소납부 배제대상에 추가
- (그 외 현행화) '23년부터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지특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74①은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서 삭제하고,
 - 감면율이 100%가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11①, §84①)에 대해서도 현행화 차원에서 삭제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 실제적 변경없이 현행화한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 유지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 ----- ----- ----- -----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 ----- 제82조,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중복감면 배제 ○ (중복배제 용어) 감면 ○ (중복배제 적용) 동일 과세대상 ○ (중복배제 예외) §73, §74, §92, §92의2	☐ 중복특례 배제로 명확화 ○ (중복배제 용어) 특례 ○ (중복배제 적용) + 동일세목 ○ (중복배제 예외) §73, §74의2①, §92, §92의2

☐ 개정내용

- 서울 감면과 중과세 배제 등이 동시에 해당 시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토록, 중복 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명확화
 - * (§2①6) “지방세 특례”란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또한, 세목이 다른 경우에는 세목별로 각각 유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복 범위’를 ‘동일 세목으로 한정’하는 문언 삽입
- 한편, 과표공제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복배제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대상 현행화
 -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 과표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인 §74의2①을 예외대상에 추가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표공제 성격의 특례 방식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는 §74는 예외대상에서 삭제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 '23. 1. 1. 전 환지계확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74①②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법률 부칙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매각·증여’의 정의*(법 신설) ☐ 유무상의 소유권 이전을 말하되, <u>그 예외대상을 시행령 위임</u> * '21년 말 정의 신설(지특법 §2①8의2) ('23.1.1. 시행)	☐ ‘매각·증여’의 예외 신설 ☐ 상속, 수용 ¹⁾ , 신탁 ²⁾ 1) 사업인정고시일 후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제외 2)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 개정내용

- ‘21년 말,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법 §2①8의2)하면서, 그 제외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

< 매각·증여의 정의 >

(지특법 §2①8의2)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23년 시행)

-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소유권이전 또는 감면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이전 등을 매각·증여의 예외 범위로 신설
- (상속)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수용)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행위가 있는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 「지방세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 ※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신수탁자]

□ 적용요령

- 2023. 1. 1.부터 시행, 수용·신탁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매각·중여의 예외”로 적용됨에 유의

※ (수용) 사업인정 고시일 등의 판단 기준(영 §1의2.2호)

- ✓ (1유형)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 ✓ (2유형) 그 외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고시가 준용·간주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 등
- ✓ (3유형) 他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공고 :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 고시일 등

※ (신탁) 지방세법 §9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1조의2(매각·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대상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지역요건 규정상 <u>인용조문 불일치</u> ○ “도시지역”의 용어를 ②항에서 정의하면서 ○ 해당 정의규정이 ②항과 ③항에서 <u>적용되도록 규정</u> ※ '21년 개정 시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이동하였으나 <u>同 조문에 미반영</u>	□ 인용조문 일치토록 <u>명확화</u> ○ (현행과 동일) ○ 해당 정의규정이 ②항과 ④항에서 <u>적용되도록 규정</u>

□ 개정내용

- 농업용 시설 규정이 같은조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한 점을 반영
 -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의 정의 규정이 제2항(농지) 및 제4항(농업용시설)에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 감면요건인 도시지역의 정의*를 영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도 동일 적용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21년말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이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

※ 해당 사안은 명확화 차원의 개정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 유지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1. ----- ----- ----- ----- 제4항-----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 관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각 호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이하 생략)

□ 개정 연혁

○ (~’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 (’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 (참고) 현재 규정으로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21년말 개정에 따른 도시지역의 정의 부재* 등을 종합 감안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목적적 해석 가능

* 개정된 제4항의 도시지역을 제2항과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규정하여야 함

3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영 § 29①·§ 38)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 범위 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 산업용 건축물등 범위 명확화 ①② 건축물 중 도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한정

☐ 개정내용

- 신기술창업집접지역(법§58③), 산업(기술)단지(법§78)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중,
- 가스·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도관시설(지방세법 시행령 §5①4)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지역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토록 명확화

☐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

※ 해당 사안은 명확화 차원의 개정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 유지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

개정 전	개정 후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u>건축물</u> 2. ~ 4. (생략)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u>건축물</u> 6. (생략)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u>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1</u>	----- ----- ----- -----. 1. ----- ----- <u>건축물</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 ----- <u>건축물</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 ----- ----- 다음 ----- ----- ----- . <단서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u>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5. 「<u>집단에너지사업법</u>」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u>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u>」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u>지방세법 시행령</u>」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u><신 설></u>	6.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1년말 법률규정 신설 ○ <신 설> ※ 초과액 산정기준, 1가구1주택자 및 일시적2주택자 범위 시행령 위임	□ 감면요건 등 마련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 ○ (초과액 산정기준)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제35조의 해당 요건과 동일 적용

□ 개정내용

- (법)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시행으로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사업에 동의하여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원 부동산 소유자 限

- 종전 부동산 가액합계 내에서는 취득세를 면제(§74의2①)하고,
-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부담하는 초과분*(§74의2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적별로 감면**(§74의2③3)

* 취득하는 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 : 75% 감면, 60㎡ 초과 ~ 85㎡ 이하 : 50% 감면

※ '21년말, 과세방식 및 감면·추징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로 법 개정

< '21년말 신설된 법규정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①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㉓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㉓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영) 법에서 위임한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 취득세 과세 방식(㉑) 및 감면·추징요건(㉒㉓) 등 마련

- (㉑과세방식) 사업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

✓ (과세 과표)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 - 지급을 유보한 금액

- (㉒㉓감면·추징요건) 취득 시 1가구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 감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가구 주택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영 §35 상 1가구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와 동일한 요건 적용

✓ (1가구 1주택)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주택 부속토지도 주택수 포함)

* 취득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

✓ (일시적 2주택자)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주택 부속토지도 주택수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부속토지만 소유 포함)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은 제외

□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2 · 제35조의3 (생략)	제35조의3 · 제35조의4 (현행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과 같음)

5

반환공여구역등 감면요건 신설(영 § 35의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반환공여구역등 창업기업 등 감면 ※ '21년말 법률규정 신설, '23년 시행 ☐ <신 설> ※ 감면요건 시행령 위임	☐ 감면요건 마련, 시행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 ☐ 감면 업종 및 사업장 범위 규정

□ 개정내용

- (법) 반환공여구역등*에서 ❶창업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 및 ❷신설·❸이전하는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법 §75의4)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캠프잭슨 등 80개소)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전국 178개 읍면동)

※ '21년말 감면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로 법 개정, '23년 시행

< '21년말 신설된 법규정 >

법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❶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❷사업장을 신설(❸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영) 법에서 위임한 업종, 사업장의 범위 등 감면요건 규정(영 §35의5)

- ✓ (공통요건) ❶❷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58의3④)을 영위할 것
 ✓ (추가요건) ❷❸사업장 설치(신설·이전)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❸사업장 이전 기업은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일 것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및 경기 일부)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영 §39)

- (창업 기업) 고용·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법§58의3④) 限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정보통신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시설 관리·경비·보안·행사대행 등 지원서비스업 ⑦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⑧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⑨물류산업 ⑩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관광 숙박·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⑫전시산업 등 12개 대분류

- (사업장 신설·이전기업)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전(移轉) 사업장의 경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옮겨 온 사업장에 限

※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도 창업기업과 업종요건 동일 적용

감 면 요 건	구 분	① 창업기업	사업장 설치 기업	
			② 신설	③ 이전
	업 종	제조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과 동일		
	규 모	-	중소기업	
	지 역	-		대도시에서 이전限

□ 적용요령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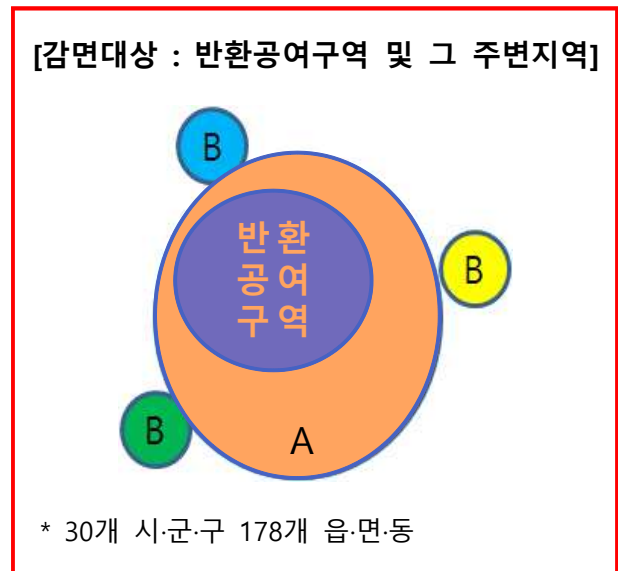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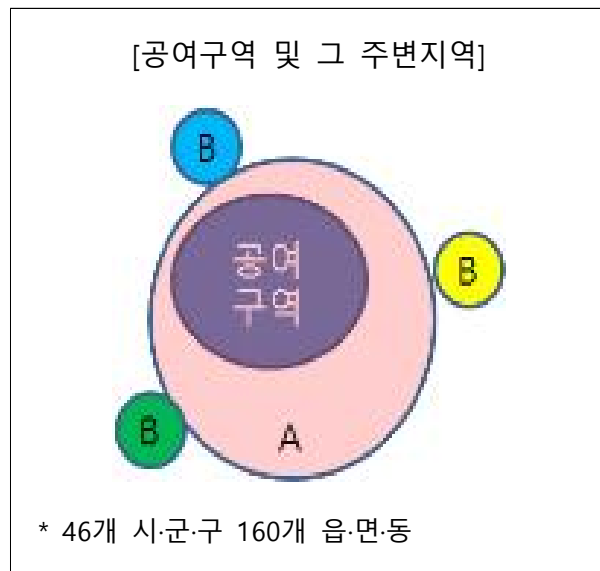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관련법상 지역 범위와 감면대상 지역

(감면대상 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限

- (공여구역)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
-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 ※ 캠프잭슨·캠프스탠리(의정부) 캠프마켓(인천 부평) 등 80개소
- (주변지역)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연접 읍·면·동 지역으로서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공여구역주변지역) 경기 수원·성남 등 46개 시·군·구(160개 읍·면·동)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경기 의정부·포천 등 30개 시·군·구(178개 읍·면·동)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9. 1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합계	시(20개) · 군(7개) · 구(3개)	읍(20개) · 면(62개) · 동(96동)
부산광역시 (6개)	부산진구(6동)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남구(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
인천광역시 (6개)	부평구(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경기도 (102개)	성남시(1동)	북정동
	고양시(3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송산1동, 송산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 · 2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2읍 · 4면 · 5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1읍 · 2면 · 1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5읍 · 9면 · 2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동, 금촌2동
	포천시(1읍 · 9면 · 2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면)	남종면, 중부면
	하남시(7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1읍 · 4면 · 6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동두천시(7동)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 · 6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면)	양동면
강원도 (27개)	춘천시(4동)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원주시(3면 · 5동)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태백시(1동)	문곡소도동
	횡성군(1읍 · 7면)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영월군(1읍 · 2면)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홍천군(2면)	동면, 서석면
	철원군(1읍)	갈말읍
경상북도 (17개)	포항시(1읍 · 14동)	홍해읍, 죽도1동, 죽도2동, 중앙동, 해도1동, 용흥동, 상대1동, 상대2동, 대이동, 장량동,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학산동, 양학동
	봉화군(2면)	춘양면, 소천면
경상남도 (6개)	사천시(1읍 · 3면)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
	진주시(2면)	정촌면, 금곡면
제주특별 자치도 (3개)	서귀포시(1읍 · 1면)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1면)	한경면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관련 법령 현행화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	☐ 관계법령 <u>조항 표시</u> 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

□ 개정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사업용자산의 정의 규정이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제9항으로 既개정('20.12.31.)

< ‘사업용자산’의 정의 규정 >

‘사업용자산’ 정의	규정	
	종전	현행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건물, 차량 등)	「지특법 시행령」 §29의2⑧	「지특법 시행령」 §29의2⑨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 상 관련 개정 사항 반영
-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8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으로 개정

□ 적용요령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2 개정 신청서식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2. 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아니오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아니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1.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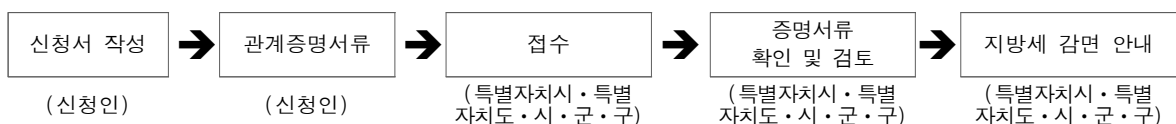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유의 사항

1.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IV. 참고자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속 환급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3.3.14.)에 대비, 전방위 홍보, 신속 환급 조치 등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불편 및 혼란 최소화

* '22년 일몰대상에 대한 특례 연장,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확대 등

1 추진 배경

- '22년 일몰대상에 대한 특례 연장 및 재설계, 신설·확대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3.14. 시행

* '22년 일몰	⇒	'23년 특례			
		합계	연장	재설계	신설
		102건	83건	11건	8건

-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혜택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既납부자 중 특례대상자에 대한 환급조치 필요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6.21.로, 그 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23.1.1.로 소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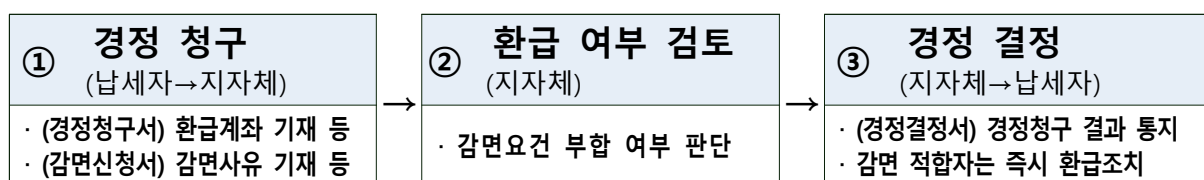
* 구 분	대상조문	⇒	소급 적용	
			✓ 101개 조문(연장 94, 신설·확대7) :	2023.1.1.
			✓ 생애최초(확대) :	2022.6.21.

2 환급조치 방안

[환급 관련 기본사항]

- ① [환급 방법] 신청과 직권의 방법을 병행, 신속·정확한 환급 추진

- (신청 환급)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 받아, 감면 결정 후 지체없이 신속 환급



○ (직권 환급)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中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 등

- 환급대상자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하여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지방세특례제한법 §183(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환급 가산금] 개정법 시행일의 익일부터 지급결정 시까지 기간에 대해 연 1.2%에 해당하는 이율로 계산하여 환급금 지급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3①4(환급가산금 기산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의 다음날 (납부일이 아님에 유의)

[생애최초 감면 환급]

○ (감면 대상자)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3년말→'25년말)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10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無)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	⇒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		12억 ↓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외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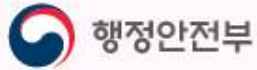
- (환급방법) 직권과 신청의 방법을 병행하여 신속 환급
 - (직권환급) 개정 前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자中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 환급 조치
 - * (예) 생초 2억주택 취득자 : 당초100만원(50%) 감면 → 개정200만원(100%) 감면
 - (신청환급)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

3 환급 안내 · 홍보

- (개정사항 전반) 환급대상임에도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만전
- (생애최초 환급) 환급대상이 광범위한 생애최초 감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언론·홈페이지·전광판 등)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주택 취득자,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신속한 환급신청 유도
- (특정지역 환급)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특정 감면 지역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 해당 감면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산업단지관리공단, 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환급신청 안내

4 행정사항

- (자치단체) 개정사항 홍보* 및 환급 안내 철저, 신속 환급 조치 만전
 - ※ 행안부에서 배포^{별첨}하는 안내 홍보용 배너 적극 활용(행안부·지자체 로고, 지자체 연락처 등 추가하여 홍보)
- (개발원·서울시) 환급업무 수행시 불편 없도록 시스템 개발·지원
 - ※ 생애최초 직권 환급대상자 쿼리문 제공, 전산 지원사항 ‘e지방세’ 게시 등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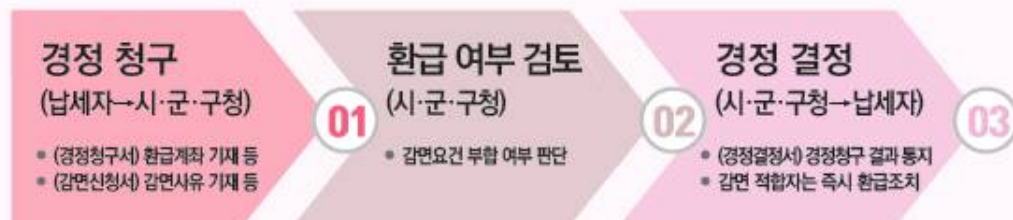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 대상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 절차 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2

2023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감면내용	조문	세목		적용시기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16.1.1.
4	노동조합	§26	○	○	
5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②1,④1	○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7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8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9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0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2	경차	§67②	○		
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이하)	§81③2	○		
14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7.1.1.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시설	§85①	○	○	
16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21년까지 적용)	§47의4①2	○	○	
17	국제선박	§64①,②,③	○		
18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18.1.1.
19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20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21년까지 적용)	§13②1의2호		○	
21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2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	○	
23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4	지역아동센터	§19의2	○	○	'19.1.1.
25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	
26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		
27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	○	

감면내용		조문	세목		적용시기
			취	재	
28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	○	
29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		
30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		
31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	
32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주택(85㎡↓)	§74④3	○		
33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	○	
34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	○	
35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②	○		
36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		
37	사회복지법인	§22①,②	○	○	'20.1.1.
38	별정우체국	§72②		○	
39	지방공단	§85의2②	○	○	
40	새마을운동조직	§88①	○	○	
41	정당	§89	○	○	
42	마을회	§90	○	○	
43	수소·전기버스	§70④	○		
44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	○	
4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	○	
46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		'20.7.10.
47	전공대학 ('23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44②	○	○	'21.1.1.~ '22.12.31.
48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		'21.1.1.
49	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 등	§57의3①	○		'22.1.1.
5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57의3④	○		
51	한국자유총연맹	§88②	○	○	
52	반환공여구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4	○		'23.1.1.
53	인구감소지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5	○	○	
54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	○	'26.1.1.
55	도시철도공사	§63⑤	○	○	